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96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박지원 · 김의겸 · 김한규
김남희 · 서영교 · 이성운
박균택 · 김동아 · 김용민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규정된 범죄로 수사”를 “규정된 범죄로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 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u>조사</u>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u>조사</u> 도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u>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에 따른 <u>사실관계 확인 및 면</u> <u>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u>) 또는 <u>조사</u>----- . ----- <u>사실관</u> <u>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u>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